

---

#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

---

2023. 6.

보건복지부

## II. 추진방안

### 1 추진원칙

-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의료인·환자가 적극 활용\*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

\* 총 1,419만명 대상 3,786만 건 실시('20.2.24~'23.4.30, 심평원 청구현황)

- 한편, 의료기관과 플랫폼 등의 위법행위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원칙 수립 필요

#### 비대면진료 3대 원칙

- ① (국민건강 우선)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면진료 중심으로 실시
- ② (편의성 제고)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
- ③ (선택권 존중) 의료기관 선택,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

### 2 참여범위 : 제한적 시범사업

- ① (실시기관)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,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, 약국(별도의 신청 및 지정 없음) 등
- ② (대상환자)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대상 설정
  -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
  - ☞ 시범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을 통해 대상환자 범위 지속 검토

## < 의원급 의료기관 :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>

① (대면진료 경험자)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\*이 있는 환자

-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,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

\*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에 한함 : 고혈압, 당뇨병, 정신 및 행동장애, 호흡기결핵, 심장질환, 대뇌혈관질환, 신경계질환, 악성신생물, 갑상선의장애, 간의질환, 만성신부전증

- 소아 환자(만 18세 미만)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(재진) 원칙, 휴일·야간\*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\*\*은 가능(처방 불가)

\* (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
(야간) 평일 18시(토요일은 13시)~익일 09시

\*\* 응급 진료 필요 여부, 진료과목 추천,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상담 등

② (섬·벽지 환자)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·벽지 지역(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)\*에 거주하는 환자

\* 인천 백령도,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(섬 : 363개, 벽지 : 116개 등)

③ (거동불편자) 만 65세 이상 노인(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), 장애인(등록 장애인)

④ (감염병 확진 환자)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(권고 포함)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

\* 예) A 이비인후과에서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진료 또는 C 피부과 진료

## < 병원급 의료기관 : 예외적 허용 >

○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중 ▲ 희귀질환자\*(1년 이내), ▲ 수술·치료 후 지속적 관리\*\*(30일 이내)가 필요한 환자

\*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

\*\*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, 검사결과의 설명

- 희귀질환자는 1년 이내, 수술·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

③ (수가)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 고려, 관리료 추가 지급

- (의료기관) 진찰료 +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(진찰료의 30% 수준)
- (약국) 약제비 +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(약국관리료, 조제기본료, 복약지도료의 30% 수준)

### 3 | 실행 방식

① (진료방식) 화상진료 원칙,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가능

- 환자·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 원칙
  - 다만,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(노인,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)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
  - 유·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, 메신저만으로 비대면 진료 불가

② (처방전 전달)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·이메일 등 송부

-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 금지,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 표출 등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 강화

③ (의약품 수령) 본인 수령, 대리 수령, 재택 수령\*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

\* 심·벽지 환자, 거동불편자, 감염병 확진 환자, 희귀질환자에 한함

##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

---

- ① (본인 확인)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허용대상 여부 사전확인 후 진료 실시\*

\* 확인 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

- ② (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 금지) 의료법 상 허가·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

-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할 필요가 있어 비대면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원 권유

- ③ (전담기관 운영 금지)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, 비대면 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운영 금지

\* 의료기관 월 진료건수의 30%, 약국 월 조제건수의 30%

- ④ (처방 금지) 마약류, 오·남용 우려 의약품

## 5 추진일정

---

-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(6.1.)
- 계도기간 운영(6.1.~8.31.)